

# 「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, 2016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,951,122천원으로서, 이중 3건에 540,65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

○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지출 결정액 (결정일)	지출액	이월액	잔액	예비비지출 사유
<b>합 계</b>	<b>3건</b>	<b>540,650</b>	<b>212,206</b>	<b>300,000</b>	<b>28,444</b>	
안 전 건설과	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구입	124,000 (15.06.08)	95,556	-	28,444	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 (양수기) 구입
농업기술 센터	봄 가뭄대책 영농지원	116,650 (15.06.10)	116,650	-	-	봄 가뭄대책 영농지원 (고령지채소 가뭄대비 장비지원,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)
상하수도 사업소	마을(소규모) 상수도 가뭄해소	300,000 (15.11.25)	-	300,000	-	가뭄지속화에 따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식수난 예상 취수원 확보

### 3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,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서 편성하여야 하며, 재해·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음.
-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,951,122천원으로 3건에 540,650천원을 지출결정하여, 212,206천원을 지출하고 300,0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, 28,24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- 지출내역별로 살펴보면  
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 구입 및 봄 가뭄대책  
영농지원사업은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「마을(소규모)상수도 가뭄해소 사업」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납폐쇄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은 예비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향후 예비비 집행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다 엄격히 집행해야 할 것임.

## 【관련 법령】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 
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